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안내서(매뉴얼)

본 신고안내에 따라 활용실적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실적신고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여 '입증된 자료' 만이 실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변조 문서로 인한 신고의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5. 7. 10.

목 차

I. 활용실적 신고절차 개요	1
II. 활용실적 신고 유의사항	2
III. 활용실적 신고 시스템 사용법 안내	7
IV. 시스템 입력요령 안내	19
V. 증빙서류	27
VI.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제출	34
VII. 수수료, 증명서발급, 장기불응건 안내	35
VIII. 활용실적 심사기준 안내	36
IX. 관련 규정	38
X. 서식안내	41

I. 활용실적 신고 개요

1 활용실적 신고 기간 및 접수처

□ 신고기간

- **수시 접수중**이며, 향후 변경되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 접수처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 시스템(<http://www.kipa.org/pq/new/>)
(회원가입 → 시스템에 접속 → “활용실적 등록” → “활용실적신고” 에서 활용실적 신고)

※ 시스템등록 전 심사대상특허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대상 제외

-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설계, 기타 분야] 특허·실용신안 원출원인이 아닌 경우
-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설계, 기타 분야] 발주처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사 관련 용역이 아닌 경우
- 조성물특허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험평가서 등이 없는 경우
-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 (예: 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
- 출원일보다 앞선 용역계약일자, 공사기간일 경우
- 용역의 분야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특허인 경우 (예: 이동식 번기, 안전모, 안전벨트, 도면판 등)

2 회원 가입 절차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 접속
-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을 클릭
- 회원가입시에는 별도의 **회원가입비는 없습니다.**
- ‘**기업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는 별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활용실적 신고전에 미리 준비하실 증빙서류

- 증빙서류 준비방법은 ‘**시스템 입력요령 안내**’ 항목에 자세히 기재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설계 도면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시공 사진
최초출원인증명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설명
공사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용역 계약서	중소기업 입증서류(대기업 제외)
활용금액 산정근거	기타 입증에 필요한 서류 (불필요한 경우 제외)

※ 활용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요령 제10조 제2항)

※ 심사 과정에서 증빙서류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요령 제6조 제7항)

II. 활용실적 신고 유의사항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절차와의 차이점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절차와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절차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특허기술과 현장에 실제 적용된 기술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적승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의 관련서류에 명시 및 준공 후 보고 의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신고시에는 신기술의 실질적 활용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이 없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활용여부는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실질적 활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전자격심사 : PQ (Pre-Qualification)

2

시공사진 관련

- 특허기술의 내용은 특허등록공보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으로 특정됩니다. 즉,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이 실제 적용된 기술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사진도 이에 대응되는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증빙서류] 시공 사진 [별지 제5호]’ 항목을 참조
- 청구항의 자세한 해석방법은 아래의 ‘활용실적 심사기준 안내’ 항목을 참조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방익편(10)과 후방익편(12) 그리고 돌출앵커(16)(16')가 있는 한쌍의 연결지주(11)로 이루어지는 블록에 있어서, 블록의 전방익편(10)중앙의 결합공(15)과 전,후방익편(10)(12)의 가로결합홈(13)(13') 및 세로결합홈(14)(14'), 그리고 좌,우측블록사이에 형성되는 앵커안착부(18)를 이용하여 보강수단을 결합함으로써 블록조립체와 횡재용 보강토구간을 일체화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식 보강토 용벽의 축조방법.

<특허청구의 범위 예시 1>



<시공사진 예시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량에 설치되어 교량의 신축에 따라 변형되는 탄성발침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며, 일단이 상기 탄성발침의 둘레 일면에 상단에 접촉되는 제1수평부재;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며, 일단이 상기 탄성발침의 둘레 일면의 하단에 접촉되며, 일 측면에 길이방향으로 측정눈금이 형성되는 제2수평부재;
 상기 제1 및 제2수평부재가 소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연결하되, 상단 및 하단이 각각 상기 제1 및 제2수평부재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제1 및 제2수평부재의 상대적인 수평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격어도 하나 이상의 링크부재; 및
 상기 제1 및 제2수평부재의 상대적인 수평이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단이 상기 제1수평부재의 일 측면에 회전가능하도록 힌지결합되고 하단이 상기 제2수평부재의 일 측면에 형성되는 측정눈금에 위치하도록 연결되는 측정부재-를 포함하는 교량용 탄성발침의 변형량 측정 및 결점장치.

<특허청구의 범위 예시 2>

2.1 특허장비의 사진

2.2 측정 및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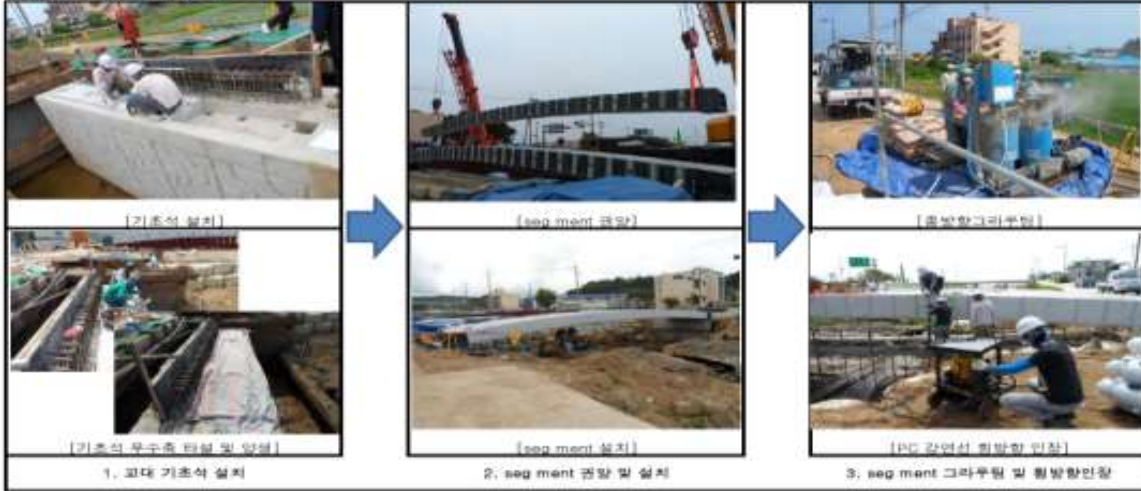
1단계 : 초기값 확인

2단계 : 측정 및 측정값 확인

<시공사진 예시 2>

4. SEG MENT 권양 및 거치

공사명 : 혁쟁이저고 설치 공사



<시공사진 예시 3>



<시공사진 예시 4>

```

////////////////////////////////////
* GIS Data에서 처리되는 알고리즘입니다.
////////////////////////////////////
class GISData {
    void checkMemoryUse() {
        * 현재 메모리 사용률이 70%이면 읽어들이는 GISData중 사용하지 않는 GISData를 제거한다. (1번 항목 참조)
        if (memory use >= 70%) {
            * 사용하지 않는 Data정보를 메모리에서 제거한다.
            for(GISData data : list) {
                if (!data.setUse) data.clear();
            }
        }
    }

    void paint(width, height, minx, miny, maxx, maxy) {
        * 읽어들이는 GIS Data를 기반으로 도면에 GIS Data를 그립니다.
    }
}
    
```

<시공사진 예시 5> - psudo code를 제출하는 경우(프로그램 기술)

3

특허 · 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설명

- 특허 · 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 “활용실적 등록” > “활용실적 신고” > “Step 6. 증빙서류 업로드”에서 [별지 제4호]의 [서식 다운로드](#) 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은 서식을 작성하셔서 업로드](#) 바랍니다. (아래의 [비교설명 예시 참조](#))
- “[특허 청구범위](#)”에는 특허등록공보의 “[청구항\(독립항만 기재\)](#)”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도면](#)”에는 특허등록공보상에 기재된 관련 “[도면](#)”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적용 여부](#)”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사항에 대한 “[시공사진](#)”을 입력하시고 특허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지시선과 명칭\)](#) 하거나 설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내용과 실제 활용 기술의 비교 설명					
기업명	000	등록번호	10-1000000	실적구분 용역명	0000 000000
특허 청구 범위		명세서 도면		실제 적용 여부	
<p>청구항 1</p> <p>교량 상부구조물의 변위거동 측정장치로서, 교량 상부구조물의 하부면에 부착 고정되는 삼각형상의 고정판(301): 상기 삼각형상의 고정판의 하부에 삼각형상의 상부 플레이트(307)가 배치되어 상기 삼각형상의 고정판의 각 모서리부와 상기 삼각형상의 상부 플레이트의 각 모서리부 사이에 위치한 강봉(302)은 용접으로 고정되고, 상기 삼각형상의 상부 플레이트의 하부에 삼각형상의 하부 플레이트(321)가 배치되어 상기 삼각형상의 상부 플레이트의 각 모서리부와 상기 삼각형상의 하부 플레이트의 각 모서리부가 각각 탄성체(309a, 309b, 309c)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삼각형상의 상부 플레이트의 각 변의 중앙부에 형성된 홈과 상기 삼각형상의 하부 플레이트의 각 변의 중앙부에 형성된 홈을 통해 일직선상으로 각각 가이드 봉(310a, 310b, 310c)이 삽입되어 관통되며, 어느 하나의 가이드 봉에 변위계(312)가 설치되고 상기 변위계의 하단부에 위치한 변위계 센서(313)가 상기 삼각형상의 하부 플레이트의 상부면에 접한 상태에서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기 삼각형상의 하부 플레이트의 변위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물의 변위거동 측정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변위계로 전송하며, 상기 삼각형상의 하부 플레이트의 각 모서리부의 하부면에는 각각 수직 방향 내측으로 경사지게 삼각봉(322)이 배치되어 역삼각형 형태의 삼각고정점(323)을 갖게 되는 변위거동 측정부; 및 ~~~를 포함하는 교량 상부구조물의 변위거동 측정장치.</p>		<p>【부호의 설명】</p> <p>301 : 삼각형상의 고정판 302 : 강봉 307, 321 : 삼각형상의 상,하부 플레이트 309a, 309b, 309c : 탄성체(스프링) 310a, 310b, 310c : 가이드 봉 322 : 삼각봉 323 : 고정점 331 : 앵커부</p> <p><도면 4></p>		<p>【고정판 및 변위거동 측정부 상세】</p>	

<특허 · 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설명 예시>

4

활용여부의 확인 매우 곤란한 기술에 대한 것인 경우

(예: 방수제/도료 등 화학물질의 성분비, 물품의 특수한 제조과정/조건 등)

-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 활용여부의 확인이 매우 곤란한 기술(예: 방수제/도료 등 화학물질의 성분비, 물품의 특수한 제조과정/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심사제의 대상임(단, 공공연구기관에서 발급받은 ‘**특허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 시험성적서(제품명 포함) 등**’ 과 **납품 증빙서류(제품명 포함)**가 있는 경우 예외)

- 입증이 불가능한 특허의 예시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보도(歩道)나 코트(court)에 시공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 경화되기 전인 가소성이 있을 동안에, 탄산칼슘 80~90중량%, 산화철 1~10중량%, 산화황 1~2중량%, 산화티타늄 1~2중량%, 백시멘트 1~6중량%의 혼합물에 천연 연석의 색상을 나타내는 안료가 함유된 분말상의 조성물인 아트스톤(art stone) 표면제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아트스톤 표면제가 콘크리트 표면에 일체로 흡착되었을 때 그 표면에 유성(油性)의 이형제를 도포한 다음, 그 표면에 아트스톤 몰드(M)를 대고 60~100kg/m² 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아트스톤을 연속되게 반복적으로 성형하여 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트스톤의 시공방법.

- ※ “탄산칼슘 80~90중량%, 산화철 1~10중량%...” 등의 성분비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 5 내지 20 중량%; 아크릴 모노머, 실리콘 폴리머 및 불소화합물을 4 : 1 : 2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60℃~80℃에서 5~8시간 동안 100~120rpm 속도로 교반 중합 반응하여 제조된 불소-실리콘계 에멀전으로서 유리전이온도 Tg가 10~20℃인 불소-실리콘계 에멀전 40 내지 50 중량%; TiO₂ 15 내지 30 중량%; 체질안료 5 내지 15 중량%; 중결제 0.1 내지 2.0 중량%; 및 첨가제 1.5 내지 3.0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오염성이 우수한 불소-실리콘계 도료 조성물.

- ※ “물 5 내지 20 중량%”, “아크릴 모노머, 실리콘 폴리머 및 불소화합물을 4 : 1 : 2의 중량비” 등의 성분비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60℃~80℃에서 5~8시간 동안 100~120rpm 속도로 교반” 등의 확인할 수 없는 시공조건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5

특허가 여러 건이거나 여러 현장에 관련된 건의 취급 안내

- 활용 특허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특허마다 별개 건으로 취급하므로 각각 별개 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특허를 여러 공사현장에 활용한 경우에도 별개 건으로 취급하므로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복수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1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건수를 기준으로 활용실적 1건으로 산정됩니다. 즉, 구간별로 복수개의 시공사에 분리발주되는 현장의 경우, 1건의 통합감리용역계약의 체결된 경우에는 활용건수는 1건으로 보며, 활용금액은 복수 개 공사현장의 활용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Ⅲ. 활용실적 신고 시스템 사용법 안내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 시스템(<http://www.kipa.org/pq/new/>)에서 ‘활용실적신고’ 메뉴의 안내에 따라 신규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규접수 처리는 **총 7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절차의 설명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1 : 활용실적 신고 정보 입력

활용실적 신고

[전체 0건] 1 / 0페이지

최종수정일 ▼ 내림차순 ○ 오름차순 검색

접수번호	등록번호(특허·실용신안)	용역명	접수일	최종수정일	비고
등록된 활용실적 신청건이 없습니다.					

신규 활용실적 신고하기

- “활용실적 등록 > 활용실적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하단의 ‘신규 활용실적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은 **총 7 Step**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Step 1 : 신고대상인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정보 입력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용역정보 입력

Step3.
공사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구분	특허 ▼		
등록번호	10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등록번호 검색 🔍	
	<small>①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small> 특허는 10으로 시작하며, 실용신안은 20으로 시작합니다. 뒷자리 숫자는 7자리입니다.		

○ 먼저,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각 입력항목의 설명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검색](#) 🔍 을 클릭하면, 신고 기업이 활용실적 신고한 이력이 있는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단, 신고 기업이 기존에 활용실적 신고한 이력이 없는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록일자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small>① 등록일자 ▼</small>
IPC CODE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IPC CODE를 입력하세요.
	<small>① IPC CODE ▼</small>
기술분야	건축구조 및 시공 ^
	<small>① 기술분야 ▼</small>
존속기간(예정)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임시저장
다음 단계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상태를 임시 저장하고자 하시면 “임시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원출원일자가 있는 경우 ‘출원일자’ 항목칸에 원출원일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록원부 확인)

▷ Step 2 : 신고대상인 특허(실용신안)가 활용된 용역에 대한 정보 입력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용역정보 입력

Step3.
공시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실적 구분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선택</div> <small>① 실적 구분</small>
용역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용역명을 입력하세요.</div> <small>①용역명</small>
용역발주형태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선택</div> <small>①용역발주형태</small>
용역계약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0</div> 천원 <small>①용역계약금액</small>
용역계약일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div> <small>①용역계약일자</small>
용역계약기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div> <small>①용역계약기간</small>

이전 단계
임시저장
다음 단계

○ 용역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정보 : 21 ~ 22페이지 (11 ~ 16번 사항)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상태를 임시 저장하고자 하시면 “임시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Step 3 : 신고대상인 특허(실용신안)가 활용된 공사에 대한 정보 입력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용역정보 입력

Step3.
공사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공사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small>① 공사명 ▾</small>
공사발주형태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일반 ▾</div> <small>① 공사발주형태 ▾</small>
공사계약금액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value="0"/> 천원 <small>① 공사발주형태 ▾</small>
공사계약일자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년"/>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월"/>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일"/> <small>① 공사계약일자 ▾</small>
공사기간	<input style="width: 3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년"/>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월"/>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일"/> ~ <input style="width: 3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년"/>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월"/> <input style="width: 10px;" type="text" value="일"/> <small>① 공사기간 ▾</small>

이전 단계
임시저장
다음 단계

- 공사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정보 : 22 ~ 23페이지 (17 ~ 21번 사항)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상태를 임시 저장하고자 하시면 “임시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Step 4 : 신고대상인 특허(실용신안)가 활용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입력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응역정보 입력

Step3.
공사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발주자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발주자명을 입력하세요."/> ① 발주자명 ▼
발주자속 대표자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발주자 분류	중앙정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발주자 주소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발주자 주소를 입력하세요."/> ① 발주자 주소 ▼
담당자 연락처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연락처를 입력하세요."/> ① 담당자 연락처 ▼

이전 단계
임시저장
다음 단계

- 발주자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관련 정보 : 23페이지 (22 ~ 26번 사항)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상태를 임시 저장하고자 하시면 “임시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Step 5 : 신고대상인 특허(실용신안)가 활용된 정보 입력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용역정보 입력

Step3.
공사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기술분야	<input type="text" value="선택"/> ① 기술분야	
실적연도	<input type="text" value="선택"/> ① 실적연도	
활용지역	<input type="text" value="광역단체 선택"/> <input type="text" value="기초단체 선택"/>	
용역참여비율	<input type="text" value="0"/> %	① 용역참여비율
활용율	<input type="text" value="0"/> %	① 활용율
전체 활용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전체 활용금액 안내
활용금액(용역참여비율을 반영)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 활용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활용 정보 : 23 ~ 26페이지 (27 ~ 33번 사항)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상태를 임시저장하고자 하시면 “임시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Step 6 : 증빙서류 업로드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응역정보 입력

Step3.
공시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이용 안내

-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는 “인쇄”를 실행
- 인쇄된 [별지 제1호] 신고서 및 [별지 제2호] 내역서에 날인
- 날인된 [별지 제1호] 신고서 및 [별지 제2호] 내역서를 스캔
- “파일찾기”를 실행하여 스캔한 [별지 제1호] 신고서 및 [별지 제2호] 내역서 파일을 업로드
- 파일명은 10자 이내로 특수문자를 제외하여 업로드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서 (별지 제1호) 인쇄 안내

파일 업로드

파일찾기

○ Step 6에서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는 화면에서 “인쇄”를 클릭하여 빨간박스의 대표자 등을 확인 후 출력합니다. 그리고 날인 및 스캔한 후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 발주처 확인서식은 현재 Step에서는 제출이 불필요하며, 최종 단계까지 입력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계속 진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이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요청(절차 4)을 하게 됩니다.

○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설명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중소기업 입증서류(다음 중 하나)

- 중소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기준검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호)(세무사,회계사 날인 포함)
- 국제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국제청 홈텍스에서 출력가능)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재직자의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제출, 재직자 전원의 명단은 불필요)를 제출
- ‘특허료’ (<http://www.patent.go.kr>)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최초출원인확인서에 중소기업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제출

이전 단계

저장하기

최종 단계

○ **업로드 및 입력이 완료되면 “최종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Step 7 : 활용실적 신고서 제출

활용실적 신고

Step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Step2.
용역정보 입력

Step3.
공시정보 입력

Step4.
발주자정보 입력

Step5.
활용정보 입력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Step7.
신고서 제출

특허·실용신안 정보

구분	특허	등록번호	10-9999999
최초출원인	최초 출원인	발명(고안)의 명칭	발명(고안)의 명칭
특허(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출원일자	2025-01-01
등록일자	2025-01-02	IPC CODE	IPC2024001
기술분야	건축구조 및 시공	권리기간	2025-01-01 ~ 2045-01-01

용역 정보

실적구분	설계	용역명	용역명
용역발주형태	일반	용역계약금액	1000000
용역계약일자	2025-01-08	용역기간	2025-01-09 ~ 2025-01-10

제출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전체 다운로드

활용실적 담당자 연락처 등록

연락처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 연락처에는 심사진행현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으실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이메일		

수정하기
신고서 제출

- Step 7에서는 이전까지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되며, 확인 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진행현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으실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2 : 심사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조회

심사수수료 납부 등록수수료 납부

접수일 ○ 오프차순 ● 내림차순 정렬

선택	접수번호	등록번호(특허·실용신안)	공시명	접수일	납부상태
<input type="checkbox"/>	20250100007	10-9999999	공시명	2025-01-20	미납

수수료 결제

- 활용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활용실적 등록 > 수수료 납부/조회” 메뉴에서 심사수수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 납부” 항목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건에 ‘체크표시’를 하시고 하단의 “납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절차 3 : 심사 진행

- 제출한 활용실적 신고서를 기초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활용실적 등록 > 심사현황 조회” 메뉴에서 ‘심사 진행중’으로 표시가 됩니다.
- 심사 결과, 경우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가 이메일로 발송(알림 자동 문자 발송)되며, 심사현황조회 메뉴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 4로 넘어갑니다.

◆ 절차 4 :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심사현황 조회

진행
심사진행 중
최종승인
승인가결

접수일: - 1주일 1개월 3개월

접수번호: 등록번호 -

공사명:

검색

심사현황 ○ 내림차순 ● 오름차순 정렬

(전체 1건) 1 / 1페이지

접수번호	등록번호(특허·실용신안)	공사명	접수일	최종수정일	심사현황	진행현황
20250100007	10-9999999	공사명	2025-01-20	2025-01-20	심사 중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및 원본제출]

1

○ “활용실적 등록 > 심사현황 조회” 메뉴에서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항목이 표시(알림 자동 문자 발송)되는 경우에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절차 4로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증명(확인)서 (별지 제3호) 발주자확인서 양식 출력

파일 업로드 파일찾기 업로드

이용 안내

※ 아래를 참고하시어, 공문과 발주자확인서를 한 개의 PDF파일로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문

- 수신처: 한국발명진흥회
- 제목: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발주자확인서 제출의 건
- 공문양식은 서류제출회사의 양식을 따르되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1. 발주처
2. 용역명
3. 용역기간
4. 특허등록번호와 활용된 기술
5. 활용현장: 특허가 활용된 행정명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명이 다른 활용현장이 다수인 경우 대표되는 행정명을 기재합니다.)

6. 필수 기재문구

당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일체 허위나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발주자확인서

- "출력" 메뉴를 클릭해서서 서식을 출력하신 후, **날짜 및 기타 공란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위한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 날인이 된 서식을 컬러 스캔 후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5 : 발주자확인서 확인

- 절차 4까지 입력된 사항을 기초로 심사위원이 발주자확인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활용실적 등록 > 심사현황 조회” 메뉴에서 ‘발주자확인서 확인’ 으로 표시가 됩니다.
- 발주자확인서 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 6으로 넘어갑니다.

◆ 절차 6 : 등록수수료 납부

심사현황 조회

전체 심사진행 중 최종승인 승인거절

접수일: [] ~ [] 1주일 1개월 3개월

접수번호: [접수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등록번호: [] - []

공사명: [공사명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심사현황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

(전체 1건) 1 / 1페이지

접수번호	등록번호(특허·실용신안)	공사명	접수일	최종수정일	심사현황	진행현황
20250100007	10-9999999	공사명	2025-01-20	2025-01-20	심사 중	[등록수수료 납부하기]

1

- 본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처리 현황에 “등록수수료 납부”가 표시되며, 클릭하면 “수수료 납부/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수료 납부/조회

심사수수료 납부 **등록수수료 납부**

접수일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렬

선택	접수번호	등록번호(특허·실용신안)	공사명	접수일	납부상태
<input type="checkbox"/>	20250100007	10-9999999	공사명	2025-01-20	미납

수수료 결제 (₩)

- “수수료 납부/조회”에서 “등록수수료 납부”를 클릭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건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하단의 “수수료 결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절차 7 : 최종 승인

- 등록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심사위원회에 의해 내부 승인이 진행됩니다.
-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며 활용실적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최종 승인 이후)

증명서 발급 신청

신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술(특허) 활용실적에 대한 증명서 목록입니다.

선택	등록번호(특허-실용신안)	발명의 명칭
<input type="radio"/>	10-9999999	발명(고안)의 명칭

상기 활용실적 내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활용실적 증명 > 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에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기업의 전체 보유권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기업 전체 보유권 발급”을 클릭하시고, 개별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기술별(특허별) 보유권 발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발급부수를 입력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카드 결제창을 통해 결제합니다.

증명서 발급 현황

발급신청일	증명서 종류	발급가능 부수	입금액	처리현황	온라인 발급
2025-01-20	활용실적 증명(기술)	3부	132000	발급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발급"/>

- “활용실적 증명 > 증명서 발급현황” 메뉴에서 처리현황에 “발급가능” 표시를 확인 후, “발급”을 클릭하면 증명서 발급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IV. 시스템 입력요령 안내

1 구 분

- 특허가 활용된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이 활용된 경우에는 “실용신안” 을 입력함
- 등록번호가 “10” 으로 시작하면 특허이며, “20” 으로 시작하면 실용신안임
- 예) “10-1234567” 이면 “특허“, “20-1234567” 이면 실용신안

2 등록번호

-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번호” 를 입력함
- 특허는 “10” 으로 시작하며, 실용신안은 “20” 으로 시작함
- **“등록번호 검색” 버튼**의 기능
 - 동일한 특허에 관하여 활용실적 신고한 적이 있는 경우, 검색리스트의 특허를 클릭하면 특허정보가 자동 입력됨. 동일한 특허에 관하여 활용실적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기존 신고된 이력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뜬

3 최초출원인

- ‘최초출원인증명서’ 에 기재된 ‘최초출원인’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발명자’ 또는 ‘고안자’ 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출원인증명 발급방법>

- 1)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 (<http://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 2)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필요)
- 3) ‘증명서발급’을 클릭
- 4) ‘최초출원인확인신청’에서 발급신청

- 정확하게는 ‘최초출원인’ 과 ‘출원인’ 은 다른 개념이지만, 건설사업관리 분야인 경우에는 최초출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출원인’ 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발명자’ 또는 ‘고안자’ 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원인 확인방법>

- 1) KIPRIS 사이트 접속 : (<http://kipris.or.kr/khome/main.do>)
- 2) 검색창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 3) 해당 특허건을 클릭하면 새창이 뜬
- 4) “상세정보” 클릭 → “서지사항”의 “(71) 출원인” 항목에 기재된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발명(고안)의 명칭

- 특허(실용신안)등록공보의 ‘발명(고안)의 명칭’

5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 등록특허(실용신안)공보의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발명자 또는 고안자 아님)를 입력함.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합니다.
- 특허가 양도가 되어 특허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특허권자**를 입력합니다.
- 최초출원인일 경우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개별적 활용한 경우)

6

출원일자

- 등록공보에 기재된 ‘출원일자’ 를 입력
-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달력모양에서 해당일을 클릭
- 원하는 연도가 선택항목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가장 과거연도를 클릭한 다음 다시 연도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을 입력하고 싶은데 “2014년” 까지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2014년” 을 일단 클릭하시고 다시 연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7

등록일자

- 등록공보의 ‘등록일자’ 를 입력
-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달력모양에서 해당일을 클릭

8

IPC CODE

- 등록특허(실용신안)공보의 첫 페이지 “(51) 국제특허분류” 항목의 코드를 입력
- 예: G08G 1/052
- 등록공보에 IPC코드가 여러 개 기재된 경우에는 처음의 IPC 코드만 입력

9

기술분야

- 특허기술이 관련된 기술분야를 선택항목에서 적절히 선택합니다.
- “측량, GIS용역” 은 “기타” 기술분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

존속기간(예정)

- 출원일 및 등록일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입력됨(입력하신 후 등록원부와 대조)

11

실적구분

- “용역정보” 는 공사현장에 관하여 신고업체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실적구분” 은 공사현장에서 신고업체가 수행한 용역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 CM용역의 경우에 선택합니다.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정밀검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설계” : 설계용역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타” : 측량용역, 계측용역, 시공감독용역, GIS DB 구축, 수중조사용역 등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에는 “기타” 를 선택합니다.

12

용역명

- “용역명” 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을 입력함.
- 용역명은 설계용역인지, 감리용역인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인지 구별이 되도록 기재요망
- 측량 등의 용역과 같이 공사계약과 용역계약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명과 공사명을 동일하게 기재
-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기준으로 작성

13

용역발주형태

- 용역의 발주 형태를 기재함

14

용역계약금액

- 용역계약서 내의 금액을 기재

15

용역계약일자

- 용역계약서의 계약일자를 기재
- 변경계약이 있더라도 최초 계약일을 기재
-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달력모양에서 해당일을 클릭
-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기준으로 작성

16

용역계약기간

- “용역계약기간” 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월일을 입력
- 예를 들어, 설계업체의 용역기간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설계용역기간을 입력
- 계약변경이 되어 용역기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일자를 적용

17

공사명

- “공사정보” 라 함은 위에서 기재하신 용역이 수행된 공사현장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공사명” 은 신고업체가 용역을 수행한 공사현장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별도로 “공사명” 이 없는 경우(예:안전진단), 용역명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예) “000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을 수행한 경우, 공사명은 “000도로건설공사”
- 예) “000신축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공사명은 “000신축공사”
- 잘못된 기재 : [공사명] “000 공동주택건립공사중 조경식재공사” (X)
- 바른 기재 : [공사명] “000 공동주택건립공사” (O)
-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기준으로 작성
- ※ [공사정보 관련 증빙 \(계약서 등\)은 ‘Step6. 증빙서류 업로드’ 단계의 ‘기타 입증에 필요한 서류’ 증빙에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사발주형태

- 공사의 발주형태를 선택
- “공사명” 항목에 기재된 전체 공사현장의 공사 발주형태를 의미하며, 수행된 용역의 발주형태가 아닙니다.
- 별도로 “공사명” 이 없는 경우(예:안전진단), 용역발주형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19

공사계약금액

- 전체 공사계약금액을 기재
([특허기술에 관한 공정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을 포함하는 전체 공사금액을 의미함](#))
-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20

공사계약일자

- 공사계약일자를 입력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달력모양에서 해당일을 클릭)
-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21

공사기간

- 공사기간을 입력
-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22

발주자명

- 발주자명을 기재하며, 공사과정에서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발주자를 기재합니다.
- 하도급에 의한 용역, 턴키 방식에 의한 용역인 경우 : 도급자가 아니라 **‘원발주자’** 를 기재
- BTL 방식에 의한 용역인 경우 : BTL 사업자를 발주자로 기재

23

발주자측 대표자명

- 발주자측 대표자명을 기재

24

발주자 분류

- 발주자 분류를 선택합니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구분을 먼저 선택한 후 세부항목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25

발주자 주소

- 발주자의 “도로명 주소” 를 입력합니다. 기존 주소체계만 알려진 경우에는 다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확인 가능합니다. → <http://www.juso.go.kr>
만약, 대응되는 기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주소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6

담당자 연락처

- 발주자측에서 해당 용역에 관한 담당실무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7

기술분야

- Step1 ‘기술분야’ 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28

실적연도

- 특허(실용신안)기술이 적용된 연도를 기재
- 2년 이상에 걸쳐 적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재

29

활용지역

- 특허(실용신안)기술이 활용된 지역

30

용역참여지분을

- 신고업체가 단독 도급한 경우에는 100%, 공동 도급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참여 비율(지분)을 기재
- 예를 들어, 감리업체인 경우, 감리용역을 단독 감리한 경우 100%, 공동감리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기재
- 건축(토목,설비,조경), 전기(통신,소방)에 대하여 각각 감리용역계약이 된 경우, 건축을 하나의 감리업체에서 감리하면 100%로 기재
- 소수점 이하는 기재하지 마시고 절사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1

활 용 율

-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해당 공정의 기성률을 입력
- 예를 들어, 특허기술이 ‘기초파일시공’에 관한 기술인 경우, 전체 건물시공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기초공정이 완료되었다면 활용율은 100%로 기재
- 원칙적으로 **활용율 100%인 실적만 실적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활용율이 100%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하여 접수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추후 활용율이 100%가 되더라도 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즉,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용역이더라도 1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32

전체 활용금액

□ 의미

-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된 해당 공종에서, 특허/실용신안 기술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된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산정함
- 다만, 해당 공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 손해배상 보험료 등)는 제외함
- 내역서상 해당 특허에 관련된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료비 (제품가격)만 기재해도 무방
- 원도급업체의 ‘도급내역서’ 상의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 산정과정은 ‘활용금액 산정근거’ 서류에 기재해야 함

□ 활용금액과의 관계

- ‘전체활용금액’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면 활용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용역참여지분율’을 고려하지 말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분율이 50%이더라도 전체(100%)에 대한 활용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경우

- 하나의 공정에 복수개의 특허가 활용된 경우
 - 각각 특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하고, 계산과정 및 근거를 “활용금액 산정근거” 항목에 업로드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종에 2개의 특허가 적용되었으며, 기성금액이 100원이고, 각각의 특허의 기여도가 3:1 정도라면 활용금액은 75원 : 25원임
- 특허가 시공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인 경우
 - 특허가 적용된 장치를 이용하는 단계의 직접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굴착장비에 대한 특허라면 굴착단계의 직접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장치의 임대료 또는 이용요금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 산정과정은 ‘V. 증빙서류’ 중 “활용금액 산정근거” 서류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 측량방법, 안전진단방법 등의 경우
 - 전체 용역 과정에서 특허가 적용된 단계가 일부분인 경우, 해당 단계에 관련된 직접비를 기재합니다. 내역서 등에 관련 단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용역에서 특허가 적용된 단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직접비를 산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용역의 작업 일수에서 특히 적용단계의 작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여도로 적용하여 직접비를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33 활용금액 [용역참여지분을 반영]

- ‘전체활용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자동 계산됨

34 활용착수일

-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된 ‘해당 공정’의 착수일을 입력함. “활용착수일”은 “공사기간”의 시작일과는 다른 개념임.
- 예1) 설계업체가 신고업체이며, 공사명은 “000 지역 도로공사”이며, 해당 특허기술은 ‘교각설치 공사’에 대한 기술인 경우, ‘교각설치’공정의 시작일을 활용착수일로 입력
- 예2) 감리업체가 신고업체이며, 해당 특허기술이 바닥배수공사에 관한 기술인 경우, 바닥배수공사의 활용착수일을 입력

35 활용완료일

-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된 ‘해당 공정’의 완료일을 입력함. “활용완료일”은 “공사기간”의 완료일과는 다른 개념임.
- 앞서 ‘활용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공정이 완료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활용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활용완료일’을 활용실적 신고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앞의 활용착수일 내용 참조

V. 증빙서류

1

[증빙서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서 (별지 제1호)

<서류 업로드 방법>

- 1) 활용실적 신고 Step 6에서 “인쇄”를 클릭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출력
- 2) 출력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날인
- 3) 날인된 서식을 컬러 스캔
- 4)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스캔 파일 업로드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서 (별지 제1호)를 시스템에서 출력 및 날인하여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내역서 (별지 제2호)

<서류 업로드 방법>

- 1) 활용실적 신고 Step 6에서 “인쇄”를 클릭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출력
- 2) 출력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날인
- 3) 날인된 서식을 컬러 스캔
- 4)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스캔 파일 업로드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내역서 (별지 제2호)를 시스템에서 출력 및 날인하여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발주자확인서 (별지 제3호)

- “발주자확인서 양식 출력” 메뉴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출력하신 후, 날짜 및 기타 공란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여 **‘원발주자’에게서 확인을 위한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활용실적 발주자확인서 순서>

- 1) “발주자확인서 양식 출력” 메뉴를 클릭하여 서식을 출력
- 2) 출력된 서식의 공란부분을 수기로 기재하고 발주자에게 가셔서 날인을 받음
- 3) 발주자 날인이 된 서식을 컬러 스캔
- 4) 발주자확인서 제출 공문 작성 ([제출 공문의 기재 내용 확인](#) p.34)
- 5) 발주자확인서 제출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

- ※ **원발주자에게 날인받은 발주자확인서를 발주자확인서 제출 공문과 함께 업로드**
 - 심사 완료 후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단계일 때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증빙서류] 활용금액 산정근거

- 내역서만으로는 산출된 전체활용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전체활용금액 산출 과정을 쉽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시는 자료입니다.
-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산출된 전체활용금액의 산정근거를 간단한 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 내역서에서 활용금액에 대한 확인이 힘든 경우, 활용금액 산정근거에 대한 증빙서류(ex. 세금계산서(제품명 포함) 및 제품 카달로그(표지, 해당 특허제품 여부 확인 가능 부분만))를 함께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내역서의 어떠한 항목이 합산되어 그러한 활용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과정이 나타나도록 작성바랍니다.

<예시>

OOOOO 공정 자재비 A : 1,000,000
OOOOO 공정 자재비 B : 2,000,000
OOOOO 공정 노무비 2,000,000
<합계> (1,000,000+2,000,000+2,000,000)*(용역참여지분율: 70%) = 3,500,000
※ 용역참여지분율 : 위의 “용역참여지분율” 항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전체활용금액”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증빙서류]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 등록원부 발급방법 :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무료)가능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 증명서 발급 → 등록원부/등록서류복사 → 등록원부교부신청 → 발급신청
- 만약, 상기 방법으로 발급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키프리스(<http://kipris.or.kr/khome/main.do>) → 해당특허 검색 → “등록사항” → “출력” 하셔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빙서류] 최초출원인증명

<최초출원인증명 발급방법>

- 1)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 (<http://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 2)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필요)
- 3) ‘증명서발급’을 클릭
- 4) ‘최초출원인확인신청’에서 발급신청

7

[증빙서류]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발급방법>

- 1) KIPRIS 사이트 접속
(<http://kipris.or.kr/khome/main.do>)
- 2) 검색창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 3) 해당 특허건을 클릭하면 새창이 뜬
- 4) "공고전문" 클릭하여 PDF 다운로드(주의: "공개전문"이 아님)

- "공개전문" 은 최종 등록된 내용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전문" 을 다운로드

8

[증빙서류] 용역 계약서

- 신고업체가 수행한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즉, 신고업체가 감리용역을 수행했다면 감리용역계약서를 업로드 바랍니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설계 변경이 된 경우에는 최초계약서 및 최종변경계약서로 업로드 바랍니다.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이행협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CM용역을 수행했으나 감리분야로 실적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서에 감리용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건설감리협회의 실적증명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답변내용, 2014.02.04.).
- 원본대조필 날인(신고업체의 인감)해서 제출 바랍니다.

9

[증빙서류] 공사 내역서

- 공사내역서 전체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공사내역서의 '표지' (공사명, 발주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전체 공종의 요약 부분(각 공종금액을 알 수 있는 부분),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공종에 대한 공사내역부분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역서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현장의 전체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공종에 대한 공사내역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역서는 원도급업체의 '도급내역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역서에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항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바랍니다.

- 만약, 내역서에 해당 특허기술에 적용된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그 기술이 속하는 항목의 금액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별도로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내역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출근거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예시 : 특허가 특정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제품의 납품가격(자재비), 관련 인건비
- 예시 : 특허가 시공방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
- 용역이 ‘정밀안전진단’, ‘측량용역’ 등과 같이 공사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내역서를 업로드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날인(신고업체의 인감)해서 제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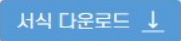
10

[증빙서류] 설계 도면

- 설계도면의 표지(현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공종에 대한 부분(특허기술이 적용된 위치를 알 수 있는 평면도, 입면도,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도 등)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이 없는 용역, 즉 안전진단용역, 측량용역 등의 경우에는 용역수행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발주처 제출서류(예를 들어, 과업수행계획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체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표지,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수행계획(특허에 관련된 부분 위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날인(신고업체 인감)해서 제출 바랍니다.

11


[증빙서류] 시공 사진 (별지 제5호)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 “활용실적 등록” > “활용실적 신고” > “Step 6. 증빙서류 업로드”에서 [별지 제5호]의  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은 서식을 작성하셔서 업로드 바랍니다.

- A4용지에 시공사진이 2장씩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PDF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사진 여러장을 압축파일로 제출금지)
- 활용실적 신고안내서에서 시공사진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조 : 안내서의 “활용실적 신고 유의사항” 항목)
- 시공사진에서 해당 “현장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참조 : 안내서의 “활용실적 신고 유의사항” 항목)
- 특허기술의 특징부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사진을 제출바랍니다.
 - 활용실적 신고안내서의 “활용실적 신고 유의사항” 항목의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기술이 시공방법인 경우, 각 시공단계별 과정이 나타난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만, 용역완료보고서에 해당 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가능합니다.
- 콘크리트, 토사 등에 매설되는 자재의 경우, 매설 이전의 설치 사진 및 해당 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사진이어야 합니다.
- 특허기술이 공장제조제품(커튼월 부재, 샷시, 공조기 fan 등)인 경우, ① 해당 제품이 설치된 사진, ② 특허가 적용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상세 사진이어야 합니다.
- 특허기술이 제품 자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는 장비’에 특징에 있거나 ‘제품의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해당 ‘장치’ 또는 해당 ‘제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특정 공법에 사용되는 장비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해당 장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례1: 특수한 구조의 드릴링 장비를 이용한 앵커시공방법의 경우, 드릴링 장비 사진
 - 사례2: 특수한 구조의 암반수평천공장치 특허의 경우, 해당 장치의 사진 및 해당 장치의 의 기능을 활용하는 시공사진
- 특허기술이 측량방법, 측량장비인 경우, 어떤 현장인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측량단계별 시공사진 또는 측량장비를 사용하여 측량작업을 하는 사진 이어야 합니다.
- 측량방법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되는 단계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①특허기술의 핵심적 단계에 대응되는 과정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화면캡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②다만, 특허기술의 특성상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처리 되고 화면캡춰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pseudo code(의사코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증빙서류]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설명 (별지 제4호)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 “활용실적 등록” > “활용실적 신고” > “Step 6. 증빙서류 업로드”에서 [별지 제4호]의  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은 서식을 작성하셔서 업로드 바랍니다. (활용기술의 비교설명)
- “특허 청구 범위”에는 특허등록공보의 “청구항(독립항)”의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도면”에는 특허등록공보상에 기재된 관련 “도면”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적용 여부”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사항에 대한 “시공사진”을 입력하시고 특허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지시선과 명칭)하거나 설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3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증빙서류] 중소기업 입증서류

<중소기업 입증서류(다음 중 하나)>

-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신청)
-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호)(세무사, 회계사 날인 포함)
- 3)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재직자의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제출, 재직자 전원의 명단은 불필요)를 제출
- 4) ‘특허로’ (<http://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최초출원인확인서에 중소기업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제출

※ 심사과정에서 활용된 기술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특허기술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업로드할 자료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입력화면 오른쪽의 “추가” 단추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기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제조사의 카탈로그 등을 업로드하시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의 카탈로그에는 특허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제품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활용실적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사의 카탈로그 등에 특허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특허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허위표시의 죄(특허법 제228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허기술의 핵심 내용이 발주처에 제출한 작업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해당 부분을 쉽게 확인가능하도록 펜으로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기술이 공장제조제품(커튼월 부재, 사시, 공조기 fan 등)인 경우, 해당 제품의 구입 및 반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반입송장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등의 분야이면서, 계약상대방이 민간기업인 경우(예를 들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BTL 사업 등)의 경우), 해당 공사가 공공공사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공문’ 또는 사업승인에 관한 고시를 출력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할 것(단, 해당 고시에 해당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기재될 것)
- 설계 등의 분야이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을 제출할 것
-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하여 실적 승계가 필요한 경우, 건설업의 포괄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의 공고문 (*참고 :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적 까지 승계되는 것임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 해외 공공공사에 해당하는 활용실적 증명은 해외건설협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해당 특허의 활용실적 확인분)를 첨부해야 함

Ⅵ.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제출

발신 : 활용실적 신고 기업명

수신 : 한국발명진흥회장

제목 :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발주자확인서 제출의 건

(공문양식은 서류제출회사의 양식을 따르되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1. 발주처
2. 용역명
3. 용역기간
4. 특허등록번호와 활용된 기술
5. 활용현장 : 특허가 활용된 행정명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131

용역이 분산된 경우 대표되는 행정명을 기재합니다.

6. 필수 기재문구

당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과 일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o 상기 '발주자확인서 제출 공문' 및 컬러 스캔한 '발주자확인서'를 한 개의 파일로 합친 후 업로드
 - 심사 완료 후 '공문 및 발주자확인서 업로드' 단계일 때,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Ⅶ. 수수료, 증명서발급, 장기불응건 안내

1 [수수료] 수수료 체계

□ 심사수수료

- 중소기업 : 건당 25만원(부가세 포함), 대기업 : 건당 69만원 (부가세 포함)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에서 카드로 결제

- ※ 같은 특허라도 각각 다른 현장에 적용되면 각각 별개건 입니다.
- ※ 심사결과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심사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종전 설계분야 실적을 감리분야(건설사업관리,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등)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

□ 등록수수료

- 중소기업 : 건당 11만원(부가세 포함), 대기업 : 건당 33만원 (부가세 포함)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에서 카드로 결제

□ 건설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수수료

- 활용실적 증명서 : 건당 66,000원(부가세 포함)
-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new/>)에서 카드로 결제

2 [증명서 발급] 건설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신청

- 기업 전체 보유건 발급신청
 - 신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활용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 기술별(특허별) 발급신청
 - 신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술(특허) 활용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3 [장기불응건] 장기불응건 처리

<장기불응건 처리에 대한 설명>

-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발주자 확인서 및 원본제출 요청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보정 및 기타 심사 진행에 필요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장기불응건으로 처리됩니다.
- 장기불응건에 대한 심사재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재심사 중 다시 장기불응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거절될 경우 심사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Ⅷ. 활용실적 심사기준 안내

1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활용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 규정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의 기술분야 및 기존 지정된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참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kaia.re.kr/portal/newtec/comparelist.do>) → 신기술현황 → 건설신기술)

2 활용여부의 판단기준

□ 심사기준의 개요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제출된 입증자료에 기재된 ‘실제 시공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실적으로 승인합니다. 특허기술과 실제 시공기술이 서로 상이하거나, 제출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실제 시공기술의 구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용실적 승인 및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법규정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허법 제94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등록공보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특허법 제97조). 따라서 특허발명의 활용여부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 특허청구범위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의하여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 구성요건완비의 원칙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에 그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 예1) 청구항에 A+B가 기재된 경우, A만을 실시한 경우 : 발명의 실시로 불인정
 - 예2) 청구항에 A+B가 기재된 경우, B만을 실시한 경우 : 발명의 실시로 불인정
 - 예3) 청구항에 A+B가 기재된 경우, A+B를 실시한 경우 : 발명의 실시로 인정

3

기술핵심이 조성물 (예:방수제, 도료 등)에 대한 것인 경우 심사 기준

-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에 관한 사항, 활용여부의 확인이 매우 곤란한 기술(예: 방수제/도료 등 화학물질의 성분비, 물품의 특수한 제조과정/조건 등)에 대한 것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중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특허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심사에 착수합니다.

4

특허 심사과정과 활용실적 심사과정의 차이

-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예:수술/치료/진단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불인정), 신규성(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 진보성(공지기술에 비하여 용이 발명 불가능할 것) 등을 만족하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특허심사과정에서는 현실에서의 입증가능성, 활용가치, 상업성, 경제성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특허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매우 어렵더라도 특허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활용실적 심사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특허를 활용하였는지 여부가 심사기준이므로 특허등록사실에 관계없이 현실에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활용실적 승인이 곤란합니다.

5

활용건수의 산정기준

- 여러 지역에 특허기술이 적용되더라도 발주청과의 사이에 ‘1건’의 ‘계약’ 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활용건수는 1건으로 인정하며 활용금액은 여러 지역에서의 실적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 걸쳐서 복수 개의 지하수측정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발주청과 1건으로 계약하여 해당 기술이 활용된 경우에는 활용건수는 1건으로 인정합니다.
- 또한, 복수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1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용역 계약의 건수를 기준으로 활용실적 1건으로 산정됩니다. 즉, 구간별로 복수개의 시공사에 분리 발주되는 현장의 경우, 1건의 통합감리용역계약의 체결된 경우에는 활용건수는 1건으로 보며 활용금액은 복수 개 공사현장의 활용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IX. 관련 규정

○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요령

○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건설기술)]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건설공사)]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준속기간 내에 특허를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준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3**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발명진흥법 제52조

- 발명진흥법 제52조 제1항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X. 서식 안내

[별지 제1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서

1.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분류		전화		팩스	
주소				담당자전화번호	
중소기업여부		자본금		전기매출액	
2. 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존속(예정)기간	
IPC Code					
발명(고안)의 명칭					
최초출원인			현재권리자		
3.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총괄)					
활용금액(용역참여지분을 반영)			천원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

[별지 제2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내역서

등록번호	
활용실적 보유자	
대표자	(인)

일련 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발주자분류	기술분야	활용지역	실적구분	활용착수일	활용완료일	활용금액 (용역참여지분을 반영)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소) 계									천원

[별지 제3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발주자 확인서

신고인	상 호		대 표 자		※<신고인 확인란> 활용실적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용역 및 공사 내역					
용역발주형태	용역명	용역계약금액	용역계약일자	용역기간	※<발주자 확인란> 본인은 본 특허·실용신안이 설계에 적용되고 공사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발주형태	공사명	공사계약금액	공사계약일자	공사기간	발주자명: (직인) 발주자주소: 담 당 자: 담당자전화번호: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주의사항 위 발주자의 확인은 해당 특허·실용신안이 '적용' 되고 공사에 '반영' 되었다는 점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이며, 공사에 반영된 기술이 특허·실용신안과 동일한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52조의 전문기관이 신고인의 제출서류 및 특허법 규정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에 확정 됩니다.
제 호					
용역참여지분율	활용률	활용금액(용역참여지분율 반영)			
%	%	천원			

[주 의]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에 발주자등이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 설명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 설명					
기업명		등록 번호		실적구분	
				용역명	
특허 청구 범위		명세서 도면			실제 적용 여부

[별지 제5호] 시공사진

용역명	0000 용역	공정명	
특허번호	제 10-0000000호	위치	00시 00군 00면 (읍/면/동 단위)

1-1. 특허 제품 사진(1)

1 단계(설명) :

1-2. 특허 제품 사진(2)

2 단계(설명) :

용역명	0000 용역	공정명	
특허번호	제 10-0000000호	위치	00시 00군 00면 (읍/면/동 단위)

2-1. 시공 위치

시공위치 :

2-2. 시공 위치

시공위치 :

용역명	0000 용역	공정명	
특허번호	제 10-0000000호	위치	00시 00군 00면 (읍/면/동 단위)

3-1. 사용 방법

1 단계(설명) :

3-2. 사용 방법

2 단계(설명) :